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29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일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"여의도 수정아파트"의 주민제안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-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-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-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-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- 건축물에 관한 계획
- 용적률계획
-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3. 위원회 심사방법

- 원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 및 보충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·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함.
- 4. 심사결과: 의견 없음

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 제 210 호

제출연월일: 2023. 8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"여의도 수정아파트"의 주민제안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
결정	명칭	이구			ш¬	
구분	500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비고
기정	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	여의도동 32번지	-	증) 15,537	15,537	-
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	으로 증가예상 내수	비고
	재건축사업	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-		57세대 계획:466세대)	-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적(m²)	비율(%)	비고
합 계	15,537.0	100.0	
획 지	15,537.0	100.0	

3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가) 용도지역(변경없음)

구 분		비율(%)	ш¬		
	기정	변경	변경후	미퓰(%)	비고
합 계	15,537.0	_	15,537.0	100.0	
일반상업지역	15,537.0	-	15,537.0	100.0	

나) 용도지역 : 해당없음

4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교통시설

○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규모				연장			사용	주요	최초	비	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점	형태	구표 경과지	^{죄소} 결정일	고
기정	광로	1	27	70	주간선	주간선 1,730	국회	시청	일반	_	건고143	
1/1/8	정도	<u>- 1</u>		10	도로	1,730	의사당앞	예정지앞	도로	_	(`70.3.26)	
기정	중로	1	131	20	보조간선	1,195	여의동로	여의동로	일반		_	
/1/8	궁도	1	131		工二七七七	1,195	어크랑도	어크랑도	도로	_	1	

^{※ ()}는 구역 내 연장임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76		기성이 조리	이귀		면적(m²))	비고
구분		시설의 종류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미끄
신설		관리사무소	획지1	-	증) 75.0	75.0	∘10m²+(466세대-50세대) x0.05m²=30.8m²이상
"		소 계	"	_	증) 2,309.0	2,309.0	
"		경로당	"	_	증) 400.0	400.0	∘[서울특별시 주택조례] 총량기준100∼1,000세대
"	주민	어린이집	"	-	증) 290.0	290.0	:466세대x2.5 m²x1.25 = 1,165.0 m²이상
"	공	작은도서관	"	_	증) 180.0	180.0	•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
"	동	부대시설	"	_	증) 600.0	600.0	(300~500세대) 1.경로당: 155㎡이상
"	시	어린이놀이터	"	_	증) 766.0	766.0	2.어린이집: 198㎡이상 3.작은도서관:108㎡이상
"	설	주민운동시설	"	_	증) 73.0	73.0	

[※]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, "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"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

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 :	구분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ш
	명칭	면적(<i>m</i>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- 비고
변경	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5,537.0	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	3	_	-	3	-	

7)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가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	역구분	위치	주용도	건폐율	;	용적률(%))	높이(m)	비고		
	명칭	면적(m²)			(%)	기준	허용	정비계획				
신규	여의도 수정아파. 재건축 정비구역	15,537.0	여의도동 공동주택 ' 32번지 부대복리시		1 60% of	하 400	420	477.74 이하	175m 이하			
				· 주택공급계획 : 466세대 · 건립규모 및 비율								
				구분	총세대수	임대(세대)	분양(서	[대) ^비	율(%)			
주	스택의 구	7모 및	60) m² 이하	90	44	46		19.3	1		
규 	규모별 건설비율			m²∼85 m² 이하	156	5	151	-	33.5			
				jm² 초과	220	_	220		47.2			
				계	466	49	417	7	0.00	┚╻		
,	심의완화사항		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최대 20%이내)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」인센티브 적용 공공보행통로 8.24%, 열린단지 5%, 공개공지 1.8%, 지역기반시설 정비 0.86%, 지역특화 5.49% : 총 21.39% 중 20% 적용 									
건축	축물의 7 관한 7	건축선에 계획	∘ 건축한계선: 국제금융로변 : 5m, 국제금융로7길변 : 3m(11층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후퇴) 여의나루로6길변 : 3m									
	공	공보행통로	。구)mbc부지와의 경계부 6m(대상지 내 3m폭으로 확보)									
기타/		전면공지	∘ 국제금융로변 5m ∘ 국제금융로7길변 : 3m ∘ 여의나루로6길변 : 3m									
		차량출입 불허구간	• 국제금	/융로변 및 ⁼	국제금융로7	길변으로 차	방출입 불려	허구간 지	정			
		공개공지	• 국제금	유용로변, 국제	베금융로7길	변 교차부 1,	157.69 <i>r</i>	n² 계획				

[※]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동시·동일 하게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함

[※]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

나) 용적률계획

구분				산장	정내용					
						기반시설	등			
토지이용	구역면적	획 지	소계	(공공청	건축물 (공공청사–서울투자청)			건축물(임대주택)		
계획 (<i>m</i>)			<u> </u>	계	환산부지	대지지분	계	환산부지	대지지분	
	15,537.0	15,537.0	1,690.15	798.94	275.17	523.77	891.21	122.71	768.50	
공공시설부 지 제공면적 (순부담)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	내 기존 = 798. • 400% © • 420% © : 공공보	 전축물(공공청사-서울투자청)기부채납 + 건축물(임대주택)기부채납 -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-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= 798.94㎡ + 891.21㎡ - 0㎡ - 0㎡ = 1,690.15㎡ (구역면적대비 10.88%) ◆400% 이하 ◆420% 이하 : 공공보행통로 8.24%, 열린단지 5%, 공개공지 1.8%, 지역기반시설정비 0.86%, 지역특화 5.49% : 총 21.39% 중 20% 적용 								
건축물 기부채납	지역특화 5.49% : 총 21.39% 중 20% 적용 · 상한용적률 상향을 위한 건축물(공공청사-서울투자청) 기부채납 : 연면적 2,500.0㎡ · 상한용적률 상향을 위한 건축물(임대주택) 기부채납 : 59형 39세대, 84형 2세대 = 총 41세대(연면적 : 3,428.1㎡ + 240.0㎡ = 3,668.1㎡)									
상한용적률	○ 상한용적률 = 기준(허용)용적률 X (1+1.3 X 가중치 X × a [토지] + 0.7 × a [건축물]) = 420% × (1 + 1.3 × 1 × 0.09072 + 0.7 × 0.02793) = 477.74% 이하 (건축계획용적률 : 477.31%) ※ a[토지] = 공공시설제공면적(토지)÷공공시설부지 제공(토지) 후 대지면적 = (523.77 m² + 768.50 m²) ÷ (15,537 m² - 523.77 m² - 768.50 m²) = 0.09072 a[건축물] = 공공시설제공면적(건축물) ÷ 공공시설부지 제공(토지) 후 대지면적 = (275.17 m² + 122.71 m²) ÷ (15,537 m² - 523.77 m² - 768.50 m²) = 0.02793 가중치 =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÷ 사업부지 용적률 = 1									

다)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○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

계획기준	○ 공공주택(공공기여) 건설 : 국계법 제52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 ○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[별표3] 제2호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은 400% 이하이며,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완화될 수 있다. ○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
------	--

	용적률 증가분	· 409.989 = 9.989		-적률) - 400	%(조례상 주 <u>ː</u>	거용적률)			
	초과 연면적	∘ 15,537.0㎡(대지면적) × 9.98% = 1,550.59㎡ 이상							
공공주택	공공주택 (주거용적률완화) 면적산출	○ 증가연면적 (1,550.59㎡)의 1/2 = 775.30㎡ 이상 ○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공급면적 = 세대수 × 공급면적 = (5세대(59㎡형) × 87.90㎡) + (3세대(84㎡형) × 120.00㎡) = 8세대 = 775.30㎡							
(주거용적률		세대규	·모(m²)						
완화) 산출근거	공공주택 (주거용적률위화)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			
	확보 계획	합	계	8	799.50m²	〉775.30m(초과)			
		59.90	87.90	5	439.50m²	주거용적률			
		84.90	120.00	3	360.00m²	완화(공공기여)에 따른 공공주택			

3. 추진경과

- 1976.07.23. : 여의도 수정아파트 준공
- 2002.03.20. :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(D등급) '재건축' 판정
- 2019.01.17. : 정비구역지정 제안접수(입주자대표회의→영등포구청)
- 2019.03.~04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부서협의
- 2022.07.20. : 정비구역지정 제안 보완(입주자대표회의→영등포구청)
- 2022.08~09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27개 부서 협의
- 2023.02.13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- 2023.02~03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35개 부서 재협의
- 2023.05.08. : 관련부서(기관) 재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- 2023.05.22. : 대공방어협조구역 건축물 높이 초과로 인한 국방부 (수방사) 추가협의
- 2023.06.22. : 영등포구청 총괄건축가 자문
- 2023.07.20.~08.21. : 주민공람공고
- 2023.07.27. : 주민설명회 진행

4.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

- 주민설명회: 2023. 07. 27.
- 주민공람
 - 공 고 일: 2023.07.20. ~ 08.21.
 -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
- 관련부서 협의
 - 1차 협의기간: 2022.08.10.~09.26.
 - 2차 협의기간: 2023.02.16.~03.28.

5. 검토의견

금회 제출안건은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바,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함.

붙임 1

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1. 1차 관련부서 협의결과

○ 협의기간: 2022.08.10.~09.26

○ 협의부서: 서울시(13), 영등포구(10), 유관기관(4)

○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	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
1	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(앤) 과의 정합성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 도시관리과,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	○ 대상지는 현재 「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인접하여 「여의 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 획」이 수립 중에 있어 관련 계획 반영 및 정합성 등 관련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계획 수립할 것	○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(안)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소관부서(공공개발사업담당관) 와 협의하였으며, 인접한 여의 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(안)의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정합성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계획함	반 영 (첨부 ¹
2	인접지 개발계획을 고려한 밀도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	○ 인접지 연관계획(수립중인 아파 트지구 지구단위계획(안), 신속 통합기획(안) 등)을 고려하여 건축배치, 통경축 및 스카이라 인 계획 등 연계 검토 할 것	 ○ 인접 개발부지(구MBC 등) 계획을 고려하여 건축계획(배치,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) 하였음 (구MBC 49층, 공작아파트 49층) (대상지 계획 : 45층 → 49층) 	반영 (첨부2)
3	공공주택 반영	서울시 공동주 택 지원과	O 도심 주택공급 등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반영을 적 극 검토하되 입지특성, 입주대 상자 등을 고려한 공공주택 유형/ 규모 및 사회 혼합계획 등 반영[소관부서(주택정책과) 협의 결과 반영] 할 것	○ 도심 주택공급 등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공공(임대)주택을 계 확하였음. ○ 여의도 특성 및 입주대상자 등 을 고려하여 공공(임대)주택의 유형 및 규모를 계획하였으며, 공공(임대)주택과 분양주택은 동일한 생활조건 조성 및 소셜 믹스 계획하였음	반영 (첨부3)

	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
4	차량진출입 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	○ 차량진출입 계획 재검토(상위계 획상 차량진출입 불허구간(국 제금융로변 진출입 불허) 준 수 및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단지내 도로는 위치 등 적정성 재검토 할 것	○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(안)에 따라 차량진출입 변경 계획하였며, 공공보행통로와 인접 한 도로는 보행안전을 위해 삭 제 계획함. - 당초(안) 차량진출입구간 : 국제금융로, 여의나루로6길 - 조치(안) 차량진출입구간 : 여의나루로6길	반영 (첨부5)
5	DROP ZONE 계획	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	O DROP ZONE은 공공보도를 점 유하지 않고 사유보도를 점유하도록 전용 베이를 설치하도 록 설계하고 아울러 관제용 CCTV와 음성안내를 설치하여 일반차량 주정차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설물 설치 필요	O DROP ZONE은 공공보도를 점 유하지 않고 사유보도를 점유 하도록 전용 베이를 설치하였 으며, 관제용 CCTV와 음성안내 를 설치하여 일반차량 주정차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설물 설치계획하겠음	반영 (첨부4)
6	도로 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	○ 정비기반시설 도로 기부채납 관련 주택단지 진입도로로 계 획된 구간은 기부채납시 제외(순부 담률 재산정)하고, 단지 주변 공공보도 등과의 연속성 확보 할 것	○ 당초 계획된 주택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 기부채납은 삭제하 고 공공(임대)주택 및 건축물 (육아보육키즈센터)기부채납을 통해 공공기여 하였으며, 주변 지역(브라이튼여의도)과 보도 등 연속성을 확보하였음	반영 (첨부5)

2. 2차 관련부서 협의결과

○ 협의기간: 2023.02.16.~03.28.

○ 협의부서: 서울시(18), 영등포구(11), 유관기관(6) 총35

○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구분	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
1	공공주 택 계획 관련	서울시 공동주 택 지원과, 공공주택과	○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이 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 (채광, 조망 등), 외관, 마감 계획을 하여야 하며, 「공공 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 획」에 따라 평형, 물량, 단지 배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기 바람	○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(채광, 조망 등), 외관, 마감 계획을 하겠으며, 그 외 자세한 공공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공공주택 계획은 주택정책과-2993(2023.2.16.) 「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」에 따라 평형, 물량, 단지배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였음	반영 (첨부1)
2	공공기여(건축 물) 관련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. 공공자산 담당관, 영등포구 보육지원과	○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는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, 반영 바랍 니다. 【수요조사 결과】	○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는 수요조 사결과 기존 육아 보육키즈센 터를 공공청사(서울투자청)으로 변경 하였으며, 시설의 규모 (연면적, 계획층수 등) 및 배치는 금융투자과와 협의하여 계획하였음	반영 (첨부2)
3	건축한계선 등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영등포구 도시계획과	○ 여의나루로6길 및 국제금융로7 길에 대한 도로 계획은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정합성 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라며, 건축선 등에 대하여는 「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」에 적합하 게 수립 바람	O 도로 여의나루로6길 및 국제금 융로7길은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(삼부아파트, 한양아파트) 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2 차로에서 3차로로 계획하였으 며, 「한강변 관리 기본계획」에 따라 건축선후퇴 3m를 지정함	반영 (첨부3)

구분	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
4	허용용적률 인센티브	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	○ 허용용적률계획 관련 '친환경 항목(8%)'은'서울시 지구단위계 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('22.11.)상 관련 법적 의무 기준 초과 비율에 한하여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바, 이와정합 되도록 조정 필요.	○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 정(23.03.23)에 따라 정합되도록 조정 및 적용하였음	반영 (첨부4)
5	교통처리계획	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 영등포구 교통행정과	○ 남측 도로(국제금융로)의 횡단 구성계획(4차로)은 연접한 브라 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 성 계획과 연속되도록 조정 검 토 필요 ○ 동측 도로(여의나루로6길)의 횡단 구성계획 관련 현황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연접한 브라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성계획과 연 속되도록 계획 하고, 삭제 여부 를 명확하게 제시 필요	○ 남측 도로(국제금융로)의 횡단 구성계획(4차로)은 연접한 브라 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 성 계획과 연속되도록 조정 검 토하였음 ○ 기존 영등포 경찰서의 협의 의 견(재건축 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북측 여의나루로6길(폭 12m) 노상 주차계획을 제거하 길 바람)에 따라 노상주차구 획 제거하여 계획함	반영 (첨부5)
6	공공보행통로	서울시 도시관리과, 영등포구 주택과	○ 구 MBC부지와 연접한 통행로 는 향후에도 보행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동일한 위 치에 계획 중인 공공보행통로 는 대상지 내에서 현 폭원 이 상 확보 및 유지 검토 필요	○ 상위계획 「여의도 금융중심 지구 단위계획(안)」 상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시업대상지 3m와 브라이 튼 오피스텔 3m, 총 6m 계획 되 어있었으며, 이에 따라 수정이파 트 재건축계획의 경우 3m 공공보 행통로로 계획함	반영 (첨부6)
7	DROP ZONE 계획	영등포구 교통행정과	O Drop죤은 사업지 외부도로변에 베이형으로 조성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가 불가하도록 CCTV 및 음성안내 등 관제시스템을 설치, 관리실에서 통제되도록 할 것 (현 계획대로 아파트 내부에 Drop죤이 조성되면 외부차량 금지로 인해결국 외부도로변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거나 추후 구청측으로 시설조성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외부도로변에 설치·운영이 현실적임)	O [시업지 외부가로에 베이형으로 Drop존 추가 조성하였으며, 일반차 량의 주차가 불가하도록 CCTV 및 음성안내 등 관제시스템을 설치, 관 라실에서 통제되도록 계획함	반영 (첨부7)